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35호 2014. 7.15(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 
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 
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- 4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  
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----- 7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 
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1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 
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- 14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 
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----- 19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07호

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7. 14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카드제를 통해 녹색생활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린카드 참여 확대

### 2. 주요내용

-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(제1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**2014. 8. 4.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문화관광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 /

☎ 032-560-4341 / Fax 032-560-2748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구”로 하고 “서구국민체육센터(이하 “체육센터”이라 한다)”를 “서구 국민체육센터”로 하며,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(이하 “체육센터”라 한다.)는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525번길에 둔다.

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08호

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7. 14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

#### 2. 주요내용

- 「한글 맞춤법」, 「표준어 규정」, 「외래어 표기법」 등 어문 규범에 맞지않는 용어를 알맞게 정비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

2014. 8. 4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(참조 : 문화관광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 /

☎ 032-560-4341 / Fax 032-560-2748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체육센터의 장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매년 서구국민체육센터(이하 “체육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(이하 “체육센터”라 한다)의 장 또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0조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매년 체육센터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수강하는 자”를 “수강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7일전”을 “7일 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09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7. 14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2009년에 제정된 현행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엘리트선수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연봉에서 퇴직금 제외 및 급여 기준 변경(제12조)
-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시(제13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

2014. 8. 4.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(참조 : 문화관광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 /

☎ 032-560-4341 / Fax 032-560-2748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(안)

##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각각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제3호의 규정”을 “제4조제3호”로,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사유”를 “등 그 밖에 사유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4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, “15일전”을 “15일 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20일내”를 “20일 내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별지 제5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후단 중 “사정에 의한 경우”를 “사정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단,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하며”를 “단,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「공무원연금법」 제48조에 따라 일시금으로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퇴직금은 구청 소속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
2. 월 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3항2호(별표4)는 2015. 연봉 재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10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7. 14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직장운동경기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직장운동경기부의 복무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(제7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

**2014. 8. 4.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문화관광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 /

☎ 032-560-4341 / Fax 032-560-2748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휴무일에 훈련 및 출전한 경우에는 평일 중에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13호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7. 14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

#### 2. 주요내용

- 「한글 맞춤법」, 「표준어 규정」, 「외래어 표기법」 등 어문 규범에 맞지않는 용어를 알맞게 정비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

2014. 8. 4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(참조 : 문화관광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 /

☎ 032-560-4341 / Fax 032-560-2748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”로 하고,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른”으로, “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”으로 하고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청시”를 “신청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행사프로그램”을 “행사 프로그램”으로, “포스타”를 “포스터”, “팸플렛”을 “팸플릿”으로 하고,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광역시서구청장”은 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”으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교부하여야 한다.”를 “발급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 사용허가시”를 “따른 사용허가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해”를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훼손시는”을 “훼손 시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에”를 “사용기간 중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7일전까지”를 “7일 전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, 같은 조 제1호 중 “60%”를 “60퍼센트”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정당한 사유없이”를 “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언쟁시”를 “언쟁 시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정차확행”을 “정차 반드시 준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영장을”을 “수영장의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」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 제21조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14호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7. 14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카드제를 통해 녹색생활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린카드 참여 확대

#### 2. 주요내용

-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(제12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

2014. 8. 4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(참조 : 문화관광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 /

☎ 032-560-4341 / Fax 032-560-2748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(이하 “검단복지회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”으로,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검단복지회관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(이하 “검단복지회관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하고, “마전동 산147번지”를 “완정로92번길 18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삶의 질”을 “삶의 질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, “20%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설등”을 “시설 등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, “각호에 의거”를 “각 호에 따라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간내”를 “기간 내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비영리목적”을 “비영리 목적”으로, “의한 사용료의 50%을”을 “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30%”를 “30퍼센트”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, 제4항의 “10%”를 “10퍼센트”, 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2항 및 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타”를 그 밖의“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설등사용료”를 “시설 등의 사용료”로 하고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천재지변등 기타”를 “천재지변 등 그 밖의”로, 같은 항 제3호 중 “동조례시행규칙”을 “같은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7조제1호 내지”를 “제7조제1호부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2호의 규정을”을 “제1항제2호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설비중”을 “설비 중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행사”를 “그 밖의 행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임대시”를 “임대 시”로, “규정에 의한다”를 “규정을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단서 중 “임기중이라도”를 “임기 중이라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것외”를 “것 외”로, “「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